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허창원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9년 4월 9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녹색건축물 조성촉진 시책수립과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(안 제6조)
-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
-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,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~제10조)
-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(안 제11조)
-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“그린리모델링기금”의 설치, 기금의 용도, 회계관계공무원,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해제, 회의 개최,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~안 제22조)
-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등과의 협력 체계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3조)
-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공로자에 대한 표창(안 제24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촉진 시책수립과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
 - 둘째, 안 제6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

립하도록 하였으며,

- 셋째, 안 제7조에서는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,
- 넷째, 안 제8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다섯째,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,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
- 여섯째, 안 제11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및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·용도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.

○ 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부. 끝.